

중국 강화된 “식품안전법” 금년 10월 1일부터 시행

자료작성 : aT베이징지사

주요 내용 및 시사점

□ 주요내용

- 기존 중국의 법은 식품안전 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중국정부는 지난 '14년 5월부터 식품안전법 개정을 추진
- 정부, 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'15년 4월 24일에 전국인민대표상무위원회 제 14차 회의에서 식품안전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며, 금년 10월 1일부터 정식 시행
- 개정된 법은 10장 154조항으로 기존보다 50조항이 추가되었으며,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
 1. 식품생산경영자에 대한 식품안전책임 강화 (법률문구로 명시)
 2. 식품안전 감독 소홀 및 사고발생 시 기관별 책임회피 방지를 위해 식품안전 총괄 업무기관을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으로 명확화
 3. 수출입식품의 감독관리 강화
 - 신규제품(신규원료, 식품첨가제 등)의 안전성 평가자료 제출, 수입업체가 자국의 식품안전 법률에 부합토록 해외 수출업체, 생산기업에 대한 심사제도 수립 등
 4. 특수식품(영유아, 보건식품 등) 관리 강화
 - 신원료 보건식품 및 첫 수입 보건식품은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부서에 등록(注册)
 - 보건식품 라벨 등에 질병예방, 치료효능 등에 대한 표기 금지
 - 영유아 조제식품의 원료입고~제품 출고까지의 전반적인 과정에 대한 품질관리 실시
 - 영유아조제분유의 제품배합은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에 등록 등
 5. 인터넷 쇼핑물 판매 식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
 - 온라인전자상거래의 가짜식품, 모방식품, 불량식품 등에 대한 타오바오, 1호점 등 플랫폼 제공자의 책임을 강화 (공급업체와 연대책임 등)
 6. 식품안전 사고 관련 처벌강화
 - 식품안전사고 벌금확대(15~30배), 부적합 식품에 대한 소비자 손실배상, 식품안전 문제 유발 기업에 대한 제재강화, 관할 정부 담당자 처벌 등

□ 시사점

- 최상위법인 식품안전법 개정·시행으로 하위 법령인 식품안전법 실시조례, 부서별 식품안전 관리방법(수출입식품안전관리방법 등) 개정예상
- 식품안전 강화 추세에 따라 신규로 시행되는 제도에 대한 수출업체의 모니터링 필요
 - 예포장특수선식용식품(영유아, 특수의학용식품 등) 라벨링 규정 시행('15년 7.1일 시행)
 - 식품리콜제관리법('15년 9.1일 시행), 보건식품 제품이름 표기규정('15년 8.27 발표)
-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 강화
 - 검사기준 등의 엄격한 적용으로 수입·통관 부적합 적발증가
- 현지 유통되는 제품에 대한 처벌확대
 - 수입 이후에도 식품안전에 문제가 되는 제품에 대한 벌금, 형사처벌, 리콜 등 증가
- 인터넷 쇼핑물 판매식품에 대한 입점심사 강화
 - 제품 입점에 대한 요구서류 등 조건이 이전보다 한층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